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지방세법」의 개정(2005. 1. 5)으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 종합토지세 관련조문을 삭제하는 등 감면조례 내용을 일부 수정·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으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종합토지세 관련 규정을 삭제 또는 정비함(안 제2조 ~ 안 제4조, 안 제5조 ~ 안 제6조, 안 제8조 ~ 안 제9조, 안 제11조 ~ 안 제19조, 안 21조 ~ 안 제22조, 안 제24조 ~ 안 제25조, 안 제27조)

나.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재산세의 과세표준액의 변경으로 인한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188조에 의거 세율을 인하함(안 제20조)

다. 선물거래소 등에 대한 감면은 선물거래소 설립이 5년이 경과되어 감면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폐지하고자 함(안 제2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7조, 제9조

나. 입법예고 : 2005. 3. 11 ~ 3. 31

4. 검토의견

- 본 조례 개정조례안 또한 지방세법 개정(2005. 1. 5)에 따른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른 종합토지세 관련조항을 삭제하고 관련 문구를 수정하려는 것과
-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른 급격한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방세법」 제 188조에 의거 세율을 종전 “1,000분의 3”을 “1,000분의 1.5”로 낮추고(안 제20호)
- 선물거래소 등에 대한 감면사항은 감면기한이 경과됨에 따라 폐지(안 제26조)하려는 것과
- 기타 시행상 불합리한 문구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입법예고에 대한 이의가 없는 등 법에 배치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해도 좋을 것으로 사료됨.

2005. 4.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윤 병 성